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30
----------	------

2018년 4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18년 3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8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8년 4월 3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여성가족정책실장 엄규숙)

### 1. 제안이유

-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방법·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정의) 제5호 ~제8호 신설하여 출산축하용품, 대상 아이, 보호자, 지원대상자 규정

- 제4조의2 제2항 신설하여 1인당 지원금액 10만원 이내 규정
- 제4조의2 제3항 신설하여 서울시 내 자치구 주민등록자로 지원대상 규정
- 제4조의2 제4항 신설하여 지원신청 방법 규정
- 제4조의2 제5항 신설하여 지원 신청 시 행정사항 규정
- 제4조의2 제6항 신설하여 출산축하용품 지급방법 규정
- 제4조의2 제7항 신설하여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축하용품 지급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제4조의2 제8항 신설하여 출산축하용품의 지급 실적 확인의무 규정
- 별지 제1호 서식 신설하여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서식 규정
-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출납대장 신설
- 제4조의2에 관한 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 개정

###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2) 예산조치 : 2018년 예산 반영됨(비용추계서 첨부)

3)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2018년 예산 반영됨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사항 없음

4)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2)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 Ⅲ.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지난 제276회 임시회(2017. 9. 6)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한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시행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미비사항을 사전에 정비하려는 것으로,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
- 사업기간 : '18년 7월이후 매년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출산용품 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 지급방식 : 물품
- (총)사업비 : 4,275백만원(시비 100%)
  - 축하용품지급 : 75,500명 x 100천원 x 0.5 = 3,775백만원
  - 홍보 등 : 500,000천원
- ※ 2016년 서울시 출생아동수 75,500명

#### 2 주요사항 검토

##### □ 「공직선거법」 위반 예외사항 반영(안 제4조의2)

- 「공직선거법」(제113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이 당해 선거구

- 안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기부행위는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금전 및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으로 규정되는 바,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하겠음.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 다만,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원금액(제2항), 지원대상(제3항), 지원 신청 및 사전확인 절차(제4항 및 제5항), 지원방법(제6항), 환수규정(제7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검토하건데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대상과 방법, 범위, 절차 등을 신설한 개정안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 관련 규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안 제4조의2 관련 개정사항>

조항	내용
같은조 제2항	(지원 금액)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이내로 함
같은조 제3항 및 별지 제1호	(지원대상자) 대상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실제 거주하면서 대상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별지 제1호 :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상자 명부
같은조 제4항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같은조 제5항 및 별지 제2, 3호	(사전 확인사항) 지원 전에 지원대상 해당여부 확인하고, 지원대상(별지 제2호) 및 출납대상(별지 제3호)을 관리하여야 함.

같은조 제6항	(지원 방법)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름.
같은조 제7항	(환수 규정)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함.

□ 자치구와 중복지원 문제 관련

- 현재 11개 자치구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서울시의 정책 시행 이후 중복지원의 소지가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자치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자치구와 지원 품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사업과 통합·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따라서 출산인식개선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의 출산축하용품 사업을 출산축하금사업으로 통합·변경함으로써 서울시의 출산축하용품과 자치구의 출산축하금사업으로 분리 시행하는 두 트랙(Two-Track)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지원 개시일 관련 부칙 규정

-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출산축하용품 지원(부칙 안 제2조) 대상 아이를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정하고 있음.(출산축하용품 지원 관련 개정사항(안 제4조의2)의 시행일(부칙 안 제1조)을 2018년 7월 1일임)

- 이는 2018년 사업 예산이 2016년 출생아 75,500명 기준 50%에 해당하는 37,750명 분만 편성되었기 때문인데, 지원 대상 기준일과 근접하여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이나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는 만큼, 대시민 사업홍보나 안내, 집행에 있어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

### 3 종합 의견

- 2017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초저출산 상태이며, 특히 서울시 합계출산율(0.84명, '17년도)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 출생아수 역시 역대 최저로 2010년 이후 초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임.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100조 원 이르는 예산을 집행했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보육예산을 1조 8천억 원 편성·집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2017)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 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sup>1)</sup>, 이는 서울시 저출산 정책 확대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하겠음.
- 본 개정안은 2018년 7월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사회공동체가 출산을 함

1) 박선권(2017.8),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 「지표로보는 이슈」, 제97호, 국회입법조사처.

께 축하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 예정인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예외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인 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다만 자치구의 사업과 중복소지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8명, 참석위원 5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30
----------	------

제출년월일 : 2018년 3월 20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출산축하용품 지원의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방법·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정의) 제5호 ~ 제8호 신설하여 출산축하용품, 대상 아이, 보호자, 지원대상자 규정
- 나. 제4조의2 제2항 신설하여 1인당 지원금액 10만원 이내 규정
- 다. 제4조의2 제3항 신설하여 서울시 내 자치구 주민등록자로 지원대상 규정
- 라. 제4조의2 제4항 신설하여 지원신청 방법 규정
- 마. 제4조의2 제5항 신설하여 지원 신청 시 행정사항 규정
- 바. 제4조의2 제6항 신설하여 출산축하용품 지급방법 규정
- 사. 제4조의2 제7항 신설하여 허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축하용품 지급받았을 경우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아. 제4조의2 제8항 신설하여 출산축하용품의 지급 실적

## 확인의무 규정

- 자. 별지 제1호 서식 신설하여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지원신청서 서식 규정
- 차. 별지 제2호 서식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 지원대장 및 별지 제4호 출납대장 신설
- 카. 제4조의2에 관한 사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 개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2018년 예산 반영됨(비용추계서 첨부)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사항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2018년 예산 반영됨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갈등사항 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2) 비용추계 등 자료: 별도 붙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저출산 인식개선”을 “저출산 인식개선 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산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
6. “대상 아이”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를 말한다.
7.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지원대상자”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부모 또는 보호자”를 “보호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 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⑤ 시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

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

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 ⑧ 시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대상 아이와 관련된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제4조의2제4항 관련)

접수번호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출생아와의 관계	
	주 소				
	메일주소			성별	남 / 여
보호자	부	성 명	(인)	생년월일	
	모	성 명	(인)	생년월일	
	부·모 외의 보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출생아	성 명			출생일자	년 월 일
	주 소			성별	남 / 여
수령방식 (①, ② 중 택1)	① 직접 수령 신청 ( ) ② 택배 신청 ( ) / 받을 주소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에 따라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자 확인> 1.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유가 '출생' 등으로 신규 등록된 아이에게만 적용되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3.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출산축하용품이 환수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 대상자 확인 】					
확인 사항	보호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출생아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 (생 략)</p> <p>3. <u>“저출산 인식개선”</u>이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관·학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행사, 홍보 등을 말한다.</p> <p>4.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u>“저출산 인식개선 정책”</u> ----- ----- ----- -----.</p> <p>4. (현행과 같음)</p> <p>5. <u>“출산축하용품”</u>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p> <p>6. <u>“대상 아이”</u>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출생’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아이를 말한다.</p> <p>7. <u>“보호자”</u>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8. <u>“지원대상자”</u>란 대상 아이의 보호자 중 1명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내에 주민등록을</p>

제4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시장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의2(출산축하용품 지원) ①

-----  
-- 보호자-----  
-----

-.

②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대상 아이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3. 대상 아이의 보호자가 법원이 지정한 친권자 및 후견인인 경우 대상 아이의 기본증명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에서 대상 아이를 보호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수급자증명서

⑤ 시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신 설>

<신 설>

<신 설>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 상 수령방식에 따른다.

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

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⑧ 시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

[붙임]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비 용 추 계 서

###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시 모든 출산 가정에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로 (10만원x해당출산가정수)만큼의 비용이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매년 출생아수가 변동되므로 정확한 비용을 추계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아래 비용추계의 결과는 2016년 출생아수(37,750명)를 기준으로 비용 추계함, 2018년의 경우 7월부터 시행이므로 6개월치 반영, 차년도부터는 1년치 반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	계	4,125	7,900	7,900	7,700	7,700	35,325
	사회보장적수혜금	3,775	7,550	7,550	7,550	7,550	33,975
	사무관리비	350	350	350	350	350	1,750

4.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윤지원 주무관(T. 2133-5176)

###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2018년)

1. 대상아동('18년 7월 이후 출생아수) : 37,750명  
※ 서울 출생 아동수(통계청) : 75,500명('16년)
2. 지원비용 : 1인당 10만원
3. '18년 소요예산 : 4,125백만원(시비 100%)
  - 사회보장적 수혜금 : 100천원 x 37,750명 = 3,775백만원
  - 사무관리비 : 사업 홍보, 출산양육 정보 수록 책자 제작 등 350백만원